

#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05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6. 21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일부 개정됨(2023. 3. 2.)에 따라,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」로 변경
-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여비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상위법령의 적용 및 제외사항(안 제5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4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 ※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’ 생략

## 5. 현행조례 : 【붙임 2】

## 【붙임1】 개정조례안

###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여비의 지급구분)**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**제3조(여비의 지급기준)**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4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**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 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
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**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**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2. 영 제17조·영 제22조·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“소속 장관”은 각각 “안산시의회의장”으로 본다.
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는 “「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」 제4조 및 별표1”로 본다.
5.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.
6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7.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8. 영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9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